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6. 9. 10.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0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9월 5일)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 가. 개정이유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현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구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등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고,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사유로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를 '위원의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 해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제3호)
- 실비보상 규정에 있어 '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이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으로 개정하여 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 활성화 도모(안 제12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등 조례는 지난 2006년 3월 9일 제정되어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 40명 이내로 구성,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 수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분기 1회 개최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개정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창구를 더욱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용하기 위해, 등 조례안 제 3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의 안 제 5조 제 1항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모니터단을 구성코자 했으며, 안 제 5조 제 3항과 제 4항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구체화하였음.
- 안 제 10조는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했으며, 안 제 3조 제 1항, 안 제 4조 제 2항, 안 제 10조 제 1호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고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출연월일 : 2007. 8.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고
- 협의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추어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문장으로 바꾸고자 함.

###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를 삭제하여 협의회의 다양한 구성과 활동을 도모(안 제3조)
- 구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등으로 모니터단을 구성 할 수 있고,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해촉사유로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를 ‘**위원의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협의회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안 제10조제 3호)
- 실비보상 규정에 있어 ‘**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을 ‘이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는’  
으로 개정하여 **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 활성화 도모**(안 제  
12조)

○ 각 조문의 띄어쓰기와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  
정에 맞추어 개정

- 띄어쓰기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와 조 제목은 붙임 : 제 1 조 (목적) ⇒ 제1조(목적)
- 항과 본문은 띄어 씀 : ①협의회는 ⇒ ① 협의회는
- 제2조, 제10조 : 각호 ⇒ 각 호

- 우리말 순화

- 제3조제①항, 제5조제②항, 제9조제①항 : 1인(人) ⇒ 1명
- 제4조제②항 : 잔임기간 ⇒ 남은 기간
- 제10조제1호 : 당해 ⇒ 해당
- 제12조 : 본 협의회 ⇒ 이 협의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07. 8. 8~ 8. 27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5조에”를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에”로 한다

제2조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본문중 “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운영위원회 등 구성”으로, 동조제1항중 “안건에”를 “안건과 구 교육시책에”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을 “의견수렴을”로, “운영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을 “운영위원회·모니터단 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 “10인”을 “10명”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니터단 구성은 교원, 학부모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0조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동조제1호 “당해 직위”를 “해당 직위”로 하며, 동조제3호 “기타”를 “위원의 사퇴·사망·전보·퇴직 등”으로 한다.

제12조중 “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이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간은 띄어 쓴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b></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학교 환경개선과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b>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5조에</b> 근거하여 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b>따</b>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b>각호</b>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 6. (생략)</p> <p>제 3 조 (구성) <b>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b> ①협의회는 <b>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b>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p> <p>제 4 조 (임기) ① (생략) ②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b>잔임기간</b> <b>으로 한다.</b></p> <p>제 5 조 (<b>운영위원회 구성 등</b>) ①협의회에서 상정된 <b>안건</b>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자문 및 <b>효율적인 협의회 운영</b>을 위하여 <b>운영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b>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1조(목적)----- ----- 「<b>지방자치법</b>」 제9조와 제22조에 ----- ----- -----.</p> <p>제2조(기능)----- <b>각 호</b> ----- ----- 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lt;삭제&gt; ① ----- <b>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b>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b>남은 임기로 한다.</b></p> <p>제5조(<b>운영위원회 등 구성</b>) ① ----- ----- <b>안건과 구 교육시책</b>에 ----- ----- <b>의견수렴</b>을 ----- <b>운영위원회 · 모니터단</b> 등을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운영위원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 중 <b>10인</b> 이내로 하며,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6조 ~제8조 (생략)</p> <p>제 9 조 (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b>간사 1인과 서기 1인</b>을 둔다.</p> <p>② (생략)</p> <p>제 10 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b>각호의</b>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직능 및 기관단체에서의 <b>당해 직위를</b> 상실한 때</p> <p>2. (생략)</p> <p>3. <b>기타</b> 협의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 11 조 (생략)</p> <p>제 12 조 (실비보상 등) <b>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b>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② ----- <b>10명</b> ----- -----</p> <p>③ <b>모니터단 구성은 교원, 학부모 등으로 할 수 있다.</b></p> <p>④ <b>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b></p> <p>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 ① ----- ----- <b>간사 1명과 서기 1명</b>을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해촉) ----- <b>각 호의</b>----- -----</p> <p>1.----- <b>해당 직위</b>----- -----</p> <p>2. (현행과 같음)</p> <p>3. <b>위원의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b> --- -----</p> <p>제11조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실비보상 등) <b>이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b>는 -----</p>